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중 양식업·수산종자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이 「수산업법 시행령」에서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및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」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
농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환급신청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2.10. ~ 2.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
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7호, 제8호,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

8. 「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및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육상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

9.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

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<개정 2022. . .>

농·임·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
(년 기)

(앞쪽)

※ 관리번호		처리기간	20일
신청인· 환급대상자	상호(법인명)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주소(본점 소재지)	전화번호	
① 대상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
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					
구입연월일	품목	수량	금액		
			② 구입가액	③ 환급신청액 (부가가치세)	④ 합계 (②+③)
합 계					

환급금계좌신고	거래은행	은행	지점	계좌번호
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-

위와 같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제3항 및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환급대행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	직접 환급 신청하는 경우	수수료 없음
	1. 환급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: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. 환급신청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: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. 환급신청명세서	1.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. 통·이장,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(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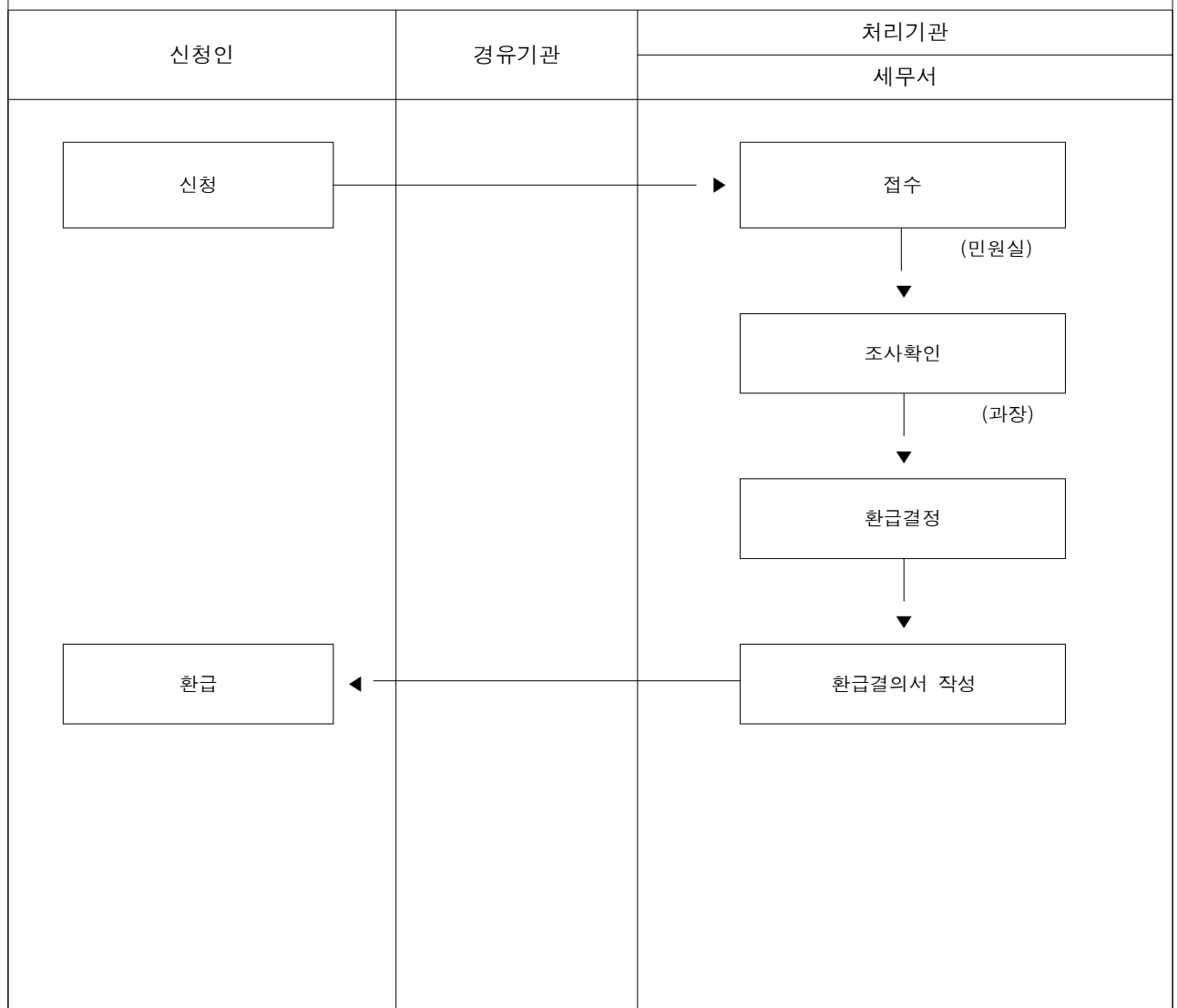
작성방법

이 신청서는 농어민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 부터 직접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

1. (년 기)란은 매분기를 각 기수로 합니다(1/4분기→제1기, 2/4분기→제2기, 3/4분기→제3기, 4/4분기→제4기).
2. ※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3. ① 대상기간란은 농··임·어업용기자재 환급대상기간을 기재합니다.
4. 환급대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자재구입 및 환급신청내용란 중 ② 구입가액, ③ 환급신청액(부가가치세), ④ 합계란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농·임·어업용 면세유류 의 범위) ①영 제15조제1항제1 호 다목에서 “ <u>기획재정부령이</u> <u>정하는 것</u> ”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.	제7조(농·임·어업용 면세유류 의 범위) ①----- ----- “ <u>기획재정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시설</u> ”이란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